

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「SOS유형(2차) 신규장학생」 선발 공고

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해 학업지속이 어려운 중·고등학생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「2023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 장학생(2차)」을 아래와 같이 선발·지원하고자 하오니 학교 및 해당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.

2023. 8. 4.(금)

한국장학재단 이사장

I 선발 개요

□ (사업명)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장학금(2차)

※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긴급위기 학생을 선발 지원(10개월 한시 지원)

□ (사업목적) 재난·재해·폭력 피해 등 긴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중·고등학생을 신속히 지원하여 학업 지속 장려

□ (선발규모) 총 700명

○ 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 없음

○ 중·고 학제별 최종 선발 인원은 학제별 신청 비율에 따라 배정 예정

※ 폭우로 인한 재난 사태 발생 등 긴급 지원 필요성 확대에 따라, 선발 계획 100명에서 700명으로 인원 확대

□ (지원규모) 선발 후 총 10개월 간 매월 30만 원 장학금 지원

○ 지원기간 : '23. 9월 ~ '24. 6월

※ 카드포인트 부여 방식으로 지급하며, 학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

※ SOS장학생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 지원 예정

II 선발 자격

□ (신청자격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, 소속 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

※ 특히, **호우피해 긴급지원**을 위해 학교에서의 **피해 학생 적극 발굴 및 신청에 협조 요청**

신청 자격	①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(단, 신청일 기준 만 24세 이하인 자) ② 국내 중·고교 재학생(중1~고3) ※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긴급구난 사유 해당 학생 · 긴급구난사유 :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의 1항~7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*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(신청일 기준 위기상황이 지속 중인 경우에 한함)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긴급구난 사유 ></p> ① 주소득자(主所得者)의 사망/가출/행방불명/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②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(放任)/유기(遺棄)/학대 ④ 가정폭력/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⑤ 거주지의 화재/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(풍수해 등 자연·사회재난 포함) ⑥ 주소득자 혹은 주소득자의 휴업/폐업/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(코로나19, 산불피해 등 자연·사회재난으로 인한 영업 곤란 포함) ⑦ 주소득자 혹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(코로나19, 산불피해 등 자연·사회재난으로 인한 소득 상실 포함)

* 이에 준하는 긴급 위기상황 : 긴급구난 세부사유 ①~⑦의 세부 기준*을 충족하지 않으나, 가정의 경제상황 및 긴급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위 상황에 준하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**소속 학교장 판단 및 추천을 통해 결정된 경우**

* 긴급구난 사유 세부 기준은 본 공고문 p.7 참고

□ 신청 제외 대상

○ 아래 항목 중 **1개 이상 해당 시 신청 불가**

- (사회적 물의)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*를 일으킨 학생 추천 불가
 - * ①정학·퇴학 등 징계받은 자, ②형사처벌(처분)을 받은 자, ③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제4~6조, 제8~9조에 해당하는 자
- (중복신청) 당해연도 꿈장학금과 중복신청 불가
 - ※ `23년 꿈장학금, SOS장학금(1차)를 신청했으나 미선발된 학생은 신청 가능
- (기 수혜자) 기존 SOS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, 재신청 불가

III 선발 절차

□ 선발 절차

구분	장학금 신청	서류 심사	심층 평가
SOS (2차)	학교추천 (학교별 인원 제한 없음)	제출 서류 확인 · 점검, 최소 자격요건 심사	'SOS 장학금 신청서' 평가 및 최종 장학생 확정 ※ 장학생 선발 · 관리위원회 생략
일정	'23. 8. 8.(화) 9:00 ~ 9. 1.(금) 18:00	'23. 9월	'23. 9월

- ※ 소득 · 성적 · 출결 · 봉사 항목은 자격 심사 제외
- 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□ (결과 발표)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공지('23년 10월 중 예정)

- 결과 발표 시 신청 교사와 학생 본인에게 문자 안내 예정
- ※ 개인정보는 반드시 정확히 기재 요망

IV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(신청기간) '23년 8월 8일(화) 9:00 ~ 9월 1일(금) 18:00

□ (신청방법) ①제출 서류는 신청 학생이 준비해야 하며, 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은 ②소속 학교의 신청 담당 교사*가 온라인 제출

① 신청 학생은 서류를 작성·준비하여 담당 교사*에게 제출

* 신청 대상 학생의 담임교사, 장학 담당교사, 학교 복지사 등

② 신청 담당 교사는 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(<https://eduman.kosaf.go.kr>)에 접속하여 추천 학생의 기초정보 및 신청 관련 제출서류 등을 접수·제출

< 온라인 접수 방법 >



[학자금지원시스템 화면]

- ① 학자금지원시스템 접속(<https://eduman.kosaf.go.kr>)
- ② 사용자 등록 및 신청 클릭 → 개인정보 기입 후 권한 신청
- ③ 입력된 정보 확인 후, 재단 담당자는 신청 권한 승인

※ 학자금지원시스템 사용자 등록 시 교육부 전자서명인증(EPKI)이 필요하며, 사용자 권한 승인까지 일정 시간(통상 1~2일)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필요

※ 단, 사용자 등록 신청은 Edge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하니 진행 시 유의 바람

□ (제출서류) 담당 교사가 온라인(학자금지원시스템)으로 제출

- (장학금 신청 시) 개인정보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, SOS 장학금 신청서
- (심층 평가 통과 이후) 학교생활기록부
 - 심층 평가 통과 이후 담당 교사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안내할 예정이나, 추가 서류 제출 기한이 촉박하므로 장학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을 권장
 - 기한 내 학교생활기록부 미제출 시 후순위자에게 기회가 부여됨에 유의

【 SOS 장학금(2차) 신청 제출서류 안내 】

구분	필요서류	세부 내용	비고
교사 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 제출	학생 신청 학생 기본정보	학생 기본정보(시스템 입력사항, 제출 불필요)	서식1
	학생 개인정보동의서 및 신청인동의서	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(학생용) ※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1인 서명 필수	서식2
	학생 SOS 장학금 신청서	학업 의지·계획 및 긴급 위기 상황 등 구체적 서술 · 1~2번 문항 ☞ 학생 작성(보호자 대리작성 불가) · 3번 문항 ☞ 보호자(법정대리인 혹은 교사) 작성 ※ 신청 시 소속 학교의 학교장 추천·직인 필수	서식6
	교사 학교생활기록부	직전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· 심층평가 통과자 대상 추가서류 심사 진행 · 보완 필요시 신청 교사에게 별도 연락 예정 ※ 원본대조필 반드시 포함	-

※ **만 14세 미만 학생**은 반드시 **법정대리인 1인 서명 및 증빙 서류**를 제출하여야 함
 ※ SOS 장학금은 긴급 선발을 위해 별도의 서류 수정 기간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신청 기간 내
 ① 장학금 신청서의 **학교장 추천·직인** 및 ② **학교생활기록부의 원본대조필** 등 **필수사항**을
반드시 확인하여 서류가 탈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하여야 함

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의 1항~7항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
학교장의 판단 및 추천을 통해 신청 (단, 신청일 기준 위기 상황이 지속 중인 경우에 한함)

V 장학금 지급

□ (지원 기간) 선발 후 총 10개월 간 한시적 지원('23.9월 ~ '24.6월)

※ 10개월 지원 종료('24년 6월) 이후에는 장학금 사용 불가

□ (지급 방법)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

- 선발 후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체크카드 발급 필수
- '23년 12월 연말까지 카드 미발급 시 미사용 잔액 전액 소멸

※ 선발된 장학생이 카드 발급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경우, 카드 발급을 위한 별도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발급 전 하나은행에 개별 확인 필요

※ 결과 발표는 학생 및 신청교사 개별 문자,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

VI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

□ (신청기간 준수) 신청기간 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

☞ 제출서류 미비, 자필서명 누락, 신청기간 미준수, 신청정보 오입력, 허위자료 제출 등은 탈락 사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제출 필요

□ (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 학생일 경우) [서식2]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(학생용) 작성 시 법정대리인 1인 동의 필수

※ 법정대리인 범위: 친권자, 미성년후견인, 관련 법령에 따른 후견인 등

※ 법정대리인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

□ (부정청구 제재) 장학금 부정 청구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

※ 부정청구 예시: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고의에 의한 허위로 판명 시 등

□ (상세내용) 장학금 신청 세부내용은 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참고

- 장학금 > 국가우수장학금 >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> 공지사항

□ (문의처) :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-2290

- (개별문의) 재단 홈페이지 > 고객센터 > 질문있어요(온라인상담)

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

■ 지원자(학생) 유의사항

1. 지원자는 지원자 인적정보, 각종 동의서 및 서류(이하 서식) 등 지원자 기재사항을 스스로 작성하고, 지원자 확인 서명을 한 후 관련 자료를 신청 담당교사에게 제출합니다.
2. [신청서식]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<https://www.kosaf.go.kr>)-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-장학재단은 지금(공지사항)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컴퓨터(글자 크기 11, 줄 간격 160%(조정 가능)) 또는 자필로 작성하며, 자필로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필기도구(연필 제외)를 사용하십시오.
3. SOS 장학금 신청서 작성 시 문항별 작성 주체가 다르므로 작성 시 유의하십시오.

〈 만 14세 미만 학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방법 〉

□ 지원자가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일 경우 [서식2]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및 신청인 동의서(학생용) 작성 시 법정대리인 1인 동의 필수

○ 법정대리인의 범위: 친권자, 미성년후견인, 관련 법령에 따른 후견인 등

구분	법정대리인 동의 방법	법정대리인 증빙서류 (제출필요)
양부모 가정	부모 중 1인 서명	•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 기준)
한부모 가정	(이혼) 친권 보유 부모 중 1인 서명 (사망) 생존한 부모 중 1인 서명	• 한부모 가족증명서 • 기본증명서(상세)(학생 본인 기준, 친권 기재) • 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 기준, 친권 기재)
조손가정	법정대리인인 (외)조부 또는 (외)조모 중 1인 서명	• 가족관계증명서((외)조부 또는 (외)조모 기준) • 가족관계증명서(학생 본인 기준) • 기본증명서(상세)(학생 본인 기준)
보호시설	미성년자(고아)일 경우 보호시설의 장 서명 ※시설미성년후견법상 보호시설 해당	• 보호시설 수용증명서 ※ 미성년자가 고아일 경우 발급
기타	법정대리인(후견인 등) 서명	• 후견등기사항증명서 ※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발급

■ 신청 담당교사 유의사항

1. 지원자가 기재사항 및 지원자 확인서약란을 빠짐없이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.
2. 담당교사는 기재사항을 확인하시고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.
3. 학자금지원시스템 사용 시에는 사용 권한을 미리 등록하여 승인받아야 하오니, 학생을 신청하기 전 미리 권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(Edge 브라우저에서만 권한 신청 가능)
4. 학생 생활기록부는 원본대조필 확인을 기입하여 제출해 주십시오.
5. 시스템 신청 후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재확인해 주십시오.

※ 동 자료는 장학생 선발 후 장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, 비공개 문서로 관리됩니다.

참고

SOS 장학금 긴급 구난 사유 세부 기준

긴급구난사유	세부 기준
① 주소득자(主所得者)의 사망/가출/행방불명/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출 및 행방불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-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,행방불명 신고된 사람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• 구금시설 : 교도소, 구치소, 치료감호시설 등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
② 본인 및 가구 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중증 질병 또는 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질병, 암질환, 희귀난치질환 포함
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/유기/학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동학대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·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
④ 가정폭력/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정폭력 : 가구구성원 사이의 신체적,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
⑤ 거주지의 화재/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화재 및 자연재해(풍수해 등 자연·사회 재난 포함)
⑥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(副所得者)의 휴업/폐업/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휴업/폐업/사업장 화재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(신청일 기준) •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영업 곤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포함 * 무급휴직: 1개월 이상 지속 중인 자 * 자영업자: 25% 소득감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(예시) 신청일 전월의 매출이 '20년 1월, '19년도 동월, '20년도 동월이나 '21년도 동월 또는 '22년도 동월에 비해 25%이상 감소한 경우 *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: 25% 소득감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(예시) 신청일 전월의 소득이 '20년 1월, '19년도 동월, '20년도 동월이나 '21년도 동월 또는 '22년도 동월에 비해 25% 이상 감소한 경우
⑦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직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(신청일 기준)

* 긴급구난 세부사유 ①~⑦ 및 ①~⑦의 세부 기준*을 충족하지 않으나, 가정의 경제상황 및 긴급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위 상황에 준하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장 판단 및 추천을 통해 결정된 경우